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61호)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6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개요	1
1.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61호)	1
2.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63호)	3
II . 검토의견	5
1.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5

I. 개요

1.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61호)

가. 제안경위

2024년 11월 21일 권영진의원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위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63호)

가. 제안경위

2025년 1월 8일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초 2일은 유급, 다른 4일은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

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가정 양립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두 개정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 2일에서 확대려는 것으로, 권영진의원안은 15일, 김동아의원안은 휴가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임.

두 개정안은 함께 제출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5호 및 제7360호)¹⁾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안 제76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권영진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① ----- ----- ----- ----- ----- ----- -----	① ----- ----- ----- ----- ----- ----- -----

1)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 6일(유급2일)→30일(유급 15일(권영진의원안)/사용한 기간(김동아의원안))

을 지급한다. 1. 2. (생략)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u>난임치료휴가 기간</u> 중 <u>최초 2일</u>.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③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3. ----- ----- ----- ----- -----<u>기간</u> <u>중 최초 15일.</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3. ----- ----- ----- ----- -----<u>기간.</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

나. 검토의견

두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5호 및 제7360호)은 공통적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있고, 그 중 유급 휴가 기간을 권영진의원안은 휴가기간 중 15일, 김동아의원안은 사용한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함께 제출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권영진의원안은 15일, 김동아의원안은 휴가 사용 기간으로 확대하고 있음.

[표]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 고보기금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현행	권영진 의원안	김동아 의원안	현행	권영진 의원안	김동아 의원안
난임치료휴가	6일 (유급 2일)	30일 (유급 15일)	30일 (사용기간 유급)	2일	15일	사용기간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어 보임.

다만, 최근 법률 개정(2025.2.23. 시행)을 통해 신설 및 확대된 제도²⁾들이 시행 중에 있고, 이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

2) 난임치료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휴가기간 중 최초 2일) 신설(제75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휴가 전 기간으로 확대 등

는바, 확대된 제도의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제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급여 지급액 비교 >

		개정전	현행('25.2.23시행)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 대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u>난임치료휴가</u>
지 급 기 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5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u>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u> <u>난임치료휴가기간 중 2일</u>
	대규모 기업	출산전후휴가 30일 (다태아 45일) *다만,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만 30일	출산전후휴가 30일 (<u>미숙아 40일</u> , 다태아 45일) *다만,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만 30일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난임 치료휴가에 대한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난임 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난임치료휴가자 수에 대한 시나리오³⁾에 따라 향후 5년간 권영진의원안은 총 1,887억원~2,377억원(연평균 377억원~475억원), 김동아의원안은 총 4,064억원~5,119억원(연평균 813~1,024억원)으로 추계되었음.

3) 본 추계서에서의 시나리오1은 국가공무원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현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 하였으며, 시나리오2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계획안 산출 근거를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권영진 의원 안	난임치료휴가 (시나리오1)	353	365	377	389	402	1,887	377
	난임치료휴가 (시나리오2)	469	472	475	479	482	2,377	475
김동아 의원 안	난임치료휴가 (시나리오1)	761	786	812	838	866	4,064	813
	난임치료휴가 (시나리오2)	1,009	1,016	1,024	1,031	1,039	5,119	1,024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모든 난임치료휴가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실제 지급단가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6.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는 최근 모성보호급여 지급액의 급격한 증가⁴⁾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성 우려가 있으므로 육아지원제도의 급여지원기간 확대에는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

4) 모성보호급여 지급액 : ('02년)257억원 → ('24년) 24,968억원(97배 증가)
 실업급여계정 지출 대비 모성보호급여 비중 : ('21년) 11.7% → ('24년) 17.6%